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일치 >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95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5. 15.

다. 회부연월일 : 2026. 5.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을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Ⅲ. 검토의견

1.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실제 복무기간으로 변경

□ 현재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은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 2년 및 공군 2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각각 1년 6개월, 1년 8개월, 1년 6개월 및 1년 9개월인 각군의 실제 복무기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생략)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 ----- ----- ----- --.
1. 육군: <u>2년</u>	1. ----- <u>1년 6개월</u>
2. 해군: <u>2년 2개월</u> . 다만, 해병은 <u>2년으로</u> 한다.	2. ----- <u>1년 8개월</u> . ----- -- <u>1년 6개월로</u> -----.
3. 공군: <u>2년 3개월</u>	3. ----- <u>1년 9개월</u>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8조제2항¹⁾에서는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각각 육

1)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군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 2년 및 공군 2년 3개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9조제1항제3호²⁾의 6개월 이내의 단축조정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은 각각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해병 1년 6개월 및 공군 1년 9개월로 법정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역병 복무기간은 2011년 이전에는 병역법 제18조의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일치하였으나,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단축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을 적용하여 현재의 실제 복무기간이 정해짐³⁾.

□ 그런데 이와 같이 법정 복무기간에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복무기간 규정방식은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실제 복무기간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현역 복무기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사항으로 의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법정 복무기간과 실제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2)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을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3) 2011년: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단축

2018~2021년: 국방개혁 2.0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현재의 18·20·21개월 체계 완성

복무기간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법률에 실제 운영되는 복무기간을 반영함으로써 병역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6개월 범위 내 단축조정이 현재 이미 모두 적용되어 현행 법체계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탄력적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바, 장래 안보환경의 변화, 병력 수급 여건 또는 국방정책의 변동 등으로 복무기간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정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일정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현행 현역병 복무기간은 법정 복무기간에서 단축 가능 최대 범위인 6개월을 적용하여 18개월(육군 기준)로 운영 중이며, 개정안은 현행 복무기간과 달라지는 것이 없음에도 복무기간 조정을 공론화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내용 삭제 등

- 현행은 일정한 사유 발생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단축 조정은 삭제하고,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재 6개월 이내의 연장을 12개월 이내로 연장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u>조정</u>)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u>조정할</u> 수 있다. 이 경우 <u>제1호와 제3호</u> 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u>연장</u>) ① - ----- ----- <u>연장할</u> ----- --. ----- <u>제1호 및 제2호</u> ----- ----- -----.
1. <u>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u>	1. <u>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내</u>
2. <u>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u>	2.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
	3.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

<u>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u> 3. <u>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을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u> ② 국방부장관은 <u>제1항제2호</u>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u>제3호</u>에 따라 복무기간을 <u>연장</u>하거나 <u>단축</u>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u>우: 3개월 이내</u> ② -----<u>제1항제3호</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2호</u>-- -----<u>연장하</u> <u>려면</u>----- ----- -----. ----- -----.
---	--

☐ 현행법 제19조제1항4)에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전시·사변에

- 4)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준하는 사태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와 군부대 증·창설 및 병역자원이 부족한 경우 6개월 이내 연장, 항해·파병중인 경우 3개월 이내 연장, 정원 조정 및 병 지원율이 저하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개정과 연계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 및 단축 가능한 조항을 연장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원 조정 및 병 지원을 저하로 병력충원이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축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6개월 이내의 단축조항은 이미 현재 적용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정 복무기간의 개정없이는 사문화되어 있는 점과 복무기간의 예외적인 상황을 최소화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발생시 12개월 이내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상사태의 발생 정도에 따라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을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 다만, 병역자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병력 수급 여건에 따라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방개혁, 전력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적정 복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의 조정 권한을 유지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바, 행정부에 일정한 정책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발생시 12개월 이내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복무기간을 연장한 관련 사례가 없어 비상사태시를 대비한 적정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04년 병역법 개정으로 연장범위가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⁵⁾하였는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이를 다시 12개월로 연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가능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정 복무기간 조정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법정 복무기간 조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5) 병역법(법률 제7272호, 2004. 12. 31, 일부개정)

문 의 처

02)6788-5308
